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614 발의연월일: 2025. 1. 17.

발 의 자:신영대·안호영·이개호

전재수 • 문금주 • 황 희

염태영 • 김용만 • 서삼석

윤준병 • 박희승 • 김정호

박홍배 · 임광현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대범죄에 대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급여 제한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퇴직 후 저지르는 내란, 국가안보 관련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급여 제한이 불가능한 법적 공백이 있어 동일한 범죄행위에 따른 조치가 재직 중과 퇴직 후의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내란 등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가안보를 위협한 범죄에 대한 제재로서도 미흡한 점이 있음.

또한 국가에 대한 충성 의무를 저버린 자에게 계속하여 연금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며,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퇴직급여 수급자격이 있거나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재직

중이나 퇴직 후와 관계없이 내란, 국가안보 관련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급여를 제한하고, 이미 지급된 급여가 있는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5조제4항). 법률 제 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4항 중 "재직 중의 사유로"를 "이 법에 따라 퇴직급여의 수급 자격이 있거나 수급을 하고 있는 사람이"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이미 수급한 급여나 수당에 대해서는 반환 조치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65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65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① ~ ③ (생 략) 제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재직 중의 사유로 「형법」 ④ 이 법에 따라 퇴직급여의 제2편제1장(내란의 죄), 제2장 수급자격이 있거나 수급을 하 (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 고 있는 사람이-----제1장(반란의 죄), 제2장(이적 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 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 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 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후단 신설> 이 경우 이미 수급한 급여나 수당에 대해서는 반환 조치 한 다.